



거주증명서 작성 안내서

콜롬비아 특구 거주자만이 특구내에서 무상 공립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립학교나 공립특수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특구 거주사실을 증명하거나 수업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안내서는 학교직원, 학부모와 관련자들이 거주사실 증명서 발급시행을 위한 지침서로 사용될 것입니다.

거주증명절차

- 학교에 개별 학생은 워싱턴 특구 거주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직원들은 파트 에이와 파트 비(후견인에 의해 입학할 학생)와 그리고 입학생은 파트 시를 작성을 요청해야 합니다. 워싱턴특구 거주증명서 이외에 증명서를 입증할 모든 문서, 즉 거주증명서를 포함하여 필요하다면 “후견인” 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학생등록 감사기간 동안에 학교는 이들 문서와 거주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학생은 워싱턴특구 거주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워싱턴특구 거주증명서를 교직원이 진위를 확인하고 거주증명서에 이름과 거주증명서 파트 시 에 서명한 이름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워싱턴특구 거주증명서(발급 날짜와 문서종류)에 정한 요구사항에 적합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콜롬비아특구내의 공립학교나 특수학교에 등록된 학생 각자의 주거신분은 10월 5일까지 확인되어야 합니다(10월 5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다음 수업일에 해당하는 날짜). 또는 학생이 등록한 수업연도에 등록일 10일 이내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거주신분은 매년 다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연례 거주확인 은 매해 4월 1일전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거주신분 확인은 아래의 조건 (1)과(2)을 만족하는 문서 또는 홈리스 신분의 학생임을 증빙하는 문서로 확인 합니다.

후견인 신분입증 문서

“후견인”은 부모나 법원명령 보호자/가디언으로 학생과 거주하며 돌보거나 보살핌을 주지 못하는 경우를 대신해주는 사람을 말한다. 부모나 법원명령 보호자/가디언이 학생을 돌보거나 보살피지 못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환경의 경우로 적시하였다.

아이를 버림

- 감금
- 방치나 학대로 함께 살지 않는 경우
-

군복무중일 경우

- 사망
-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이외에 부모나 법원명령 보호자/가디언이 위의 환경 이외에 합당하게 다른 사유로 학생을 돌보거나 보살피지 못하는 경우도 참작이 가능합니다.

1. 콜롬비아 특구 거주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학생은 비거주 학생으로 가정하여 서명한 수업료 납부계획서나 감사실과 OSSE 에 의해 파일에 있는 수업연도의 수업료를 전부 납부한 증빙서류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수업료 납부는 수업연도 마지막 학기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학교의 McKinnev-vento 홈리스 학생연락관은 개별 홈리스학생의 거주파일에 적합한 문서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후견인”은 거주증명서 작성과정의 일부로서 다음의 문서 한가지를 제출하여 후견인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³

1. 학생이 후견인의 보호하에 있다는 전년도 기록물(다음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a. STAR 데이터베이스로부터의 다운로드물
 - b. 서명한 성적증명서
 - c. 기타 학교 기록물
2. 학생이 후견인의 보호하에 있다는 예방접종이나 신체검사기록물
3. 거주자 증명을 위한 12 개월 이내의 학생을 대신하여 후견인이 받은 공적혜택 또는 의료혜택 증빙문서(다음을 포함)
 - a. 생활안정자금 공지문
 - b. TANF 소득 통지문이나 갱신인증서
4. 위증죄 처벌 사항을 이해하고 학생의 후견임을 맹세한 선언서. 지역학교에서 표준선언서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 a. DCPS 나 특수학교 직원이 선언서에 의문을 제기하면 학생은 입학하나 OSSE 에 조사를 의뢰 합니다.
5. 법률, 의료 또는 사회봉사에서부터 미성년자에게 적합한 후견인 신분인을 입증하는 12 개월이 지나지 않은 문서

주거사실을 증빙하는 문서(1)

다음 중 한가지의 문서가 콜롬비아 거주 증빙으로 적합합니다.

DC 거주 증빙으로 인정하는 아이템 항목:	아이템이 만족해야 할 것들:
1. 급여 명세서	a. 45 일 이내에 발급된 날짜 b. 입학한 학생의 이름 c. 현재의 특구 주소 d. 현 세금 납부연도에 DC 특구 세금 납부
2 워싱턴특구정부에서 받은 다음 중 재정지원증명서 a. 생활안정지원금(TANF)증빙서류 b. 메디케이드 승인서 또는 갱신문서 c. 주택국에서 받은 주택지원서로 담당자와 전화번호가 포함되거나 담당자의 편지 d. 기타 워싱턴특구 정부로 부터 받은 재정지원 증빙서류	a. 12 개월이내의 발행일자 b. 입학학생의 이름 c. 현 워싱턴특구내 주소
3. 생활 안정자금 수혜 통지문	a. 12 개월이내의 발행일자 b. 입학학생의 이름 c. 현 워싱턴특구내 주소
4. 워싱턴특구 세무서에서 확인한 Form D40 사본	a. 입학생 후견인의 이름 b. 전년도 세금 납부서의 납부 증명서

³ 1-5 의 문서 한가지이외에 후견인은 거주자 증빙을 위한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4 OSSE 에서 발행한 후견인 선언서를 참조 바랍니다.

5 OSSE 에서 발행한 후견인 증명서를 참조 바랍니다.



5. 군 주거 명령서	a. 학생 이름과 같이 입주할 사람의 이름 b. 현 DC 집 주소
6. 콜롬비아 특구 구치 법원 명령서	a. 학생의 이름.
7. 대사관 공문서	a. 현수업연도 4월 1일 이후 공문서 b. 입학생의 이름 c. 대사관 공식 철인 d. 입학생의 이름과 현주거지가 대사관 소유로 주소지가 워싱턴 특구임을 언급한 내용일 것

DC 특구 거주자로 증빙할 목적으로 다음의 문서는 콜롬비아 특구 개인소득세 납부증빙으로 제출하지 마십시오:
(1)W-2 양식 (2) 연방소득세 리턴 또는(3) 워싱턴특구 소득세 리턴(워싱턴특구 세무서에서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DC 특구 거주자로 증빙할 목적으로 다음의 문서는 특구 정부로부터 재정지원 증빙으로 제출하지 마십시오:
(1) TANF 신분증(2)메디케이드 신분증 (3) 워싱턴특구 고용주가 발행한 신분증(워싱턴특구정부의 신분증 포함)
또는 (4)워싱턴특구 거주자의 편지

주거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2)

앞에서 언급한 차트에 증빙 문서가 없다면 아래중 2 가지문서도 증빙이 가능합니다. 문서들의 이름과 주소가 일치 해야 합니다.	
DC 거주 사실 확인에 필요한 문서:	다음과 같은 아이템이 적시되어야 합니다:
1. 만기가 되지 않은 워싱턴 특구 자동차 등록증	a. 입학생의 이름 b. 현재 DC 집 주소
2. 만기가 되지 않은 임대 또는 월세 계약서	a. 입학생 이름 b. 현 DC 집 주소 c. 과거 2 개월이내의 월세 납부용 영수증이나 취소된 수표의 영수증
3. 만료되지않은 DC 자동차 면허증이나 신분증	a. 입학생 이름 b. 현재 DC 집 주소
4. 공공요금 청구서 (가스, 전기, 수도 청구서만 인정)	a. 입학생의 이름 b. 현재 DC 집 주소 c. 과거 2 개월내의 공공요금 납부용 영수증이나 취소된 수표의 영수증

DC 거주를 증명하기 위해서 다음의 아이템은 DC 자동차 등록이나 운영자 허가를 위해 허용
지 않습니다: (1) 자동차의 타이틀 (2) 자동차 보험

또는 워싱턴 특구 거주자 증빙으로 다음의 문서를 공공요금청구서를 대체하여 제출하지 마십시오: (1) 전화요금
청구서 또는 (2) 케이블 청구서

학교에서 OSSE 가 서술한 안내서를 받지 않는다면 거주자 증명서에서 보여준 문서와 안내서의 거주자 증빙서류만
인정 합니다. 부모 또는 후견인이 다른 문서를 제출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